

2026년도

「2025년 도시관리계획(도로) 실효 노선」

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 용역

과 업 지 시 서

2026. 07.

대구광역시 달성군

목 차

I. 과업의 개요	1
II. 과업수행 일반사항	2
III. 과업의 세부지침	5
IV. 예정공정표	8

과 업 지 시 서

I. 과업의 개요

1. 과업명 : 「2025년 도시관리계획(도로) 실효 노선」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 용역

2. 과업의 목적

○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30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)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.

3. 과업의 범위

- 위 치 : 달성군 일원
- 규 모 : 도로 21개 노선(L=3,531m)

4. 과업의 수행기간

-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(180일)

5. 용역수행사항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
- 주민의견청취, 관련부서협의
-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

II. 과업수행 일반사항

1. 과업수행기준

- 가.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, 규칙,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 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한다.
- 나. 본 과업수행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도록 한다.
- 다. 본 과업은 계약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라.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, 각 분야별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.
- 마. 본 과업수행과정에 참여기술자의 부적정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자가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이행(교체)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바. 과업 수행시에는 각종 관계법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.
- 사. 인·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관계도서 작성시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구비서류를 기간내 작성 제출하여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아. 인·허가 도서작성에 필요한 계획의 내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며,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대가를 산정한다.
- 자. 각종 통계자료의 적용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정부자료를 활용하고 과업의 각종 분석자료 및 성과물에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차.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.

2. 과업기간의 조정

○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.

- 가. 과업의 내용이 변경 되었을 때
- 나.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
- 다.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
- 라.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결정이 지연되었을 때
- 마.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등 행정절차의 이행이 지연되었을 때
- 바. 기타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

3. 과업내용의 조정

- 가. 본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상호 협의·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과업수행 중 과업의 성과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의 필요성과 근거, 비용, 내용 등을 제시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.

4. 용역비용의 조정

- 가. 과업내용의 추가 등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 종료 이전에 정산하도록 한다.
- 나. 용역비용의 조정은 계약서상의 도급내역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항목 발생시는 상호협의를 통해 적정금액을 결정하도록 한다.

5. 자료의 제공

- 가.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관련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, 발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수급인이 조사·수집한다.

나. 발주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의 조사에 있어서는 그 규모·내용에 의거하여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수급인이 수행하고 당해 관련자료의 기밀성과 광범위한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조사·분석에 필요한 상당기간과 자료수집 비용이 전제된다.

6. 자료의 제출

○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7. 보안 사항

가.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·대여할 수 없으며,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누출, 보안사항 불이행 등이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,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.

나.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8. 설계변경조건

가.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

나.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

다. 본 용역시행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

라.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처와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

9. 기타사항

가.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와 설비기준 및 본 용역지침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자료에 의한 변동이 있을 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.

나. 본 과업을 수행 중 필요시 과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, 하도급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Ⅲ. 과업의 세부지침

1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

가. 계획검토

- 1)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: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
- 2)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: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

나.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서 작성

- 1)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: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
- 2)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(사업)계획서
 -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(사업)계획서의 요약 정리
 - 사업시행자, 시행방법, 시행기간, 세부사업계획, 투자계획, 현황사진, 기타 참고사항 등
- 3) 각종 영향 검토 :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초조사서, 환경성검토서, 교통성검토서, 경관검토서 작성
- 4)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: 계획 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
- 5)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도면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: 위치도,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, 지형도면고시도 등 작성
- 6)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: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
- 7) 지적도 및 토지조서, 권리조서 등 작성
 -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작성
 -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작성

2.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

가. 과업수행 일반원칙

- 관리계획(용도지역 변경 등)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.
- 지형도면 고시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.
- 도서의 작성은 관련지침에 의거 작성한다.
-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관련지침에 의거 날인을 받아야 한다.
-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수치지도로 제작된 지형지적종합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지형도면고시 선형을 중심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(KLIS)에 등재하여야 한다.

나. 검토사항

1)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현황 검토

- 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을 검토 및 분석한다.
-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검토한다.
- 기존 지형도면고시 및 KLIS도면을 검토한다.
- 기존도로 및 주요 시설물의 이용 상황을 검토한다.
- 상수도 시설 등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을 검토한다.

2) 위치, 면적, 선형 확정 도시

- 용도지역, 지구, 구역의 경계선 확정도시
-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면적확인 및 경계선 확정도시
- 선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확정도시
- 시가화구역내의 소로계획 확정도시

3. 용역성과품 작성 제출

-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서 각 1식 요구수
- 관련협의 도서 각 1식 필요부수
-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각 1식 필요부수
-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각 1식 1부
- 성과품 CD 각 1매

Ⅳ. 예정공정표

공종	과업기간	과업기간(6개월)						비고
		1개월	2개월	3개월	4개월	5개월	6개월	
기초조사 및 입안도서 작성								
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								
도시계획위원회 심의								
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								